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김예원** · 황정하***

Ⅰ 알기 쉬운 개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원가정이 아닌 가정외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성인기에 이르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원가정과 관계 경험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 모두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7명을 개별 인터뷰하여 이들의 원가정과 관계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나 보호종료로 인해 자립하는 시기 전·후,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가는 현재에까지 원가정과 관계 연결 및 단절에 대한 지원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정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경험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외보호 아동에게 원가정과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가정에게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관계지원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한 정서적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김예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전남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jhwang@jnu.ac.kr

투 고 일 / 2023. 12. 4.

심 사 일 / 2024. 1. 27.

심사완료일 / 2024. 2. 14.

Ⅰ 초록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 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이들의 원가정과 관계 연결 혹은 단절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보호종료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7명을 모집하여 개별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의미단위로 도출되었다. 원가정과 단절 계기 경험은 〈원가정과 분리로 관계가 끊어진다〉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시설에서의 원가정 관계 경험은 〈시설에서 연결과 단절을 다시 경험하다〉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원가정 관계 경험은 〈홀로서기를 맞아 선택의 기로에 서다〉로, 보호종료 전·후에 원가정 관계에 대한 지원 경험은 〈자립준비청년의 꿈에는 날개가 필요하다〉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분리될 때부터 원가정에 대한 관계 회복 또는 단절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가정외보호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원가정과 관계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 시설에서의 원가정 복귀 지원 실무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점, 시설 퇴소 이후의 원가정 관계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를 맞아 자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되기까지 원가정과 단절과 연결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고유한 인격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립준비청년, 가정외보호, 원가정, 관계지원, 질적연구

I. 서 론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누계는 총 17,811명으로 집계된다(보건복지부, 2023).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인 보호대상아동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통계청, 2022)이라는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월 말부터 시행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일시보호조치’)로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건수는 총 1,153건이다. 그중 991건의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며, 그 입소 비율은 85.9%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기존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 절차가 없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아동을 쉽게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과잉 분리를 양산하여 분리와 동시에 원가정 복귀를 고려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이광우, 2021). 게다가 2023년 10월 초 국회를 통과해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로 인해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¹⁾ 아기를 직접 기를 의사가 없는 사람은 친생부모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이 익명출산제도로 생후 한 달 이내에 합법적으로 양육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돌아갈 원가정 자체가 국가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입양 등이 아니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원가정이 아닌 가정외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성인기에 이르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에 필수적인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실업상태 내지는 열악한 고용상태,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낮은 생활수준,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가족·친구·친지 등 사회적 관계망의 결핍에 따른 고립, 정서적 지원과 애착형성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강현아 외, 2009; 김명성, 2013; 조순실, 2010). 이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도 있다(이상정 외, 2020). 또한, 보호종료 이후 연락두절 상태의 청년이 20%가 넘는다고 한다(아동권리보장원,

1) 익명출산 지원기관 역할을 해 온 서울 난곡동 소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2009년 12월 만들어진 이후 2023년 7월까지 2천101명의 아기가 들어왔다. 2015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보호된 아기 1천478명 가운데 1천86명이 시설로 갔고, 입양된 아기는 153명이었다. 원가정으로 되돌아간 아기는 282명이었다(조선닷컴 토크클래스, 2023.8.16.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것, 베이비박스’).

202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자립지원전담요원과 별도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배치하거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이들의 심리·정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제정 및 도입을 위한 법과 관련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가정외보호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기 이전부터 가족문제로 인해 발생한 외상(trauma)과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간 지속되어 온 원가정의 가족문제(정선옥, 2002)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원가정과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가정외 보호 중인 아동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향후 부모와의 동거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48.4%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38.7%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단 12.9%만이 ‘함께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이상정 외, 2020). 또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에 관한 연구 중 원가족과의 접촉이 낮을수록 오히려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in et al., 2003)거나, 부모나 가족구성원들과의 지지적 관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이 홈리스(homelessness)를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설보호 중 원가족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안정적 자립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aber & Toro, 2004; Dworsky & Courtney, 2009; Kim, 2013b 재인용)결과도 있다. 특히 보호종료를 맞이한 청년들은 친척, 친구, 이웃, 학교 교사, 교회 단체 등과 같은 폭넓은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 별안간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게 되는 데,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부족한 관계 기술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Biehal et al., 1995; Courtney & Hughes-Heuring, 2005).

위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원가정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함에 따라, 이들의 자립에 미치는 원가정의 긍정적 역할을 늘리고 부정적 역할을 줄여 온전한 자립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외보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에 이르기까지 원가정과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들 개개인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경험을 끌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개별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연구 문제로 삼았다.

II. 연구 방법

1. 현상학적 질적 연구

1)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질적연구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참여자의 언어적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 유형 중 아동양육시설(이하, 보육원) 또는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의 관계 경험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경험이 연구참여자마다 다를 것이기에, 이들 각자의 서로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석하고자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적 접근방법 중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문장이나 문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면서, 그 경험의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특히, Colaizzi의 연구절차는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경험에 의미를 두고 있기에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의 연결 또는 단절 등 이들의 공통적 경험 도출 및 함의를 제시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별 대상자와의 심층면담 후에 모든 면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사(transcription)한 후 Colaizzi의 연구방법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① 원가정에서 원가족과 생활한 경험 속에서 가정외보호 상황을 맞이하며, ② 가정외보호 유형 중 특히 보육원이나 그룹홈에 입소하여 최소한 3년 이상 시설²⁾ 생활을 경험하다가, ③ 만18세가 되어 보호연령 종료로 인한 만기퇴소를 통해 시설을 나와서, ④ 현재까지

2) 보호종료 당시 가정위탁 상태였던 자립준비청년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가정위탁보호 중 중장기보호 안에 일반가정위탁 대부분은 친인척위탁으로, 2022년 기준 중장기보호 가정위탁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2023). 이러한 보호상황은 원가정과의 잦은 교류를 가지거나 원가정과 심리적·물리적 분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간 지(보호종료된 지) 5년 미만인 20대 초·중반의 자립준비청년 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³⁾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진행되었다. 전국의 자립준비청년 약 150명 정도가 정보공유를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대표자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표집 범위를 설명한 후, 본 연구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했다. 살아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최대한 연구에 포함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성별을 동수로 맞춘다거나, 현재 원가정과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참여 의사 자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구두로 연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최종적인 참여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심층면접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연구 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절차에 의해 선정된 최종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가족관계	학력	입소이유	시설생활 기간	원가정과 현재관계
1	21	여	父母 : 생존 형제 : 2 (비동반입소)	대학교 휴학	부모이혼 부친학대	그룹홈1년 보육원5년	부 단절/ 조모, 모, 형제 연락
2	24	여	父생존/母모름 형제 : 1 (동반입소)	대학교 재학	부친구속 부모이혼	보육원 16년	부 교도소 친모 단절
3	21	여	父사망/母모름 형제 : 1 (비동반입소)	대졸후 취업	부친학대	보육원 7년	조부사망 조모, 형제 연락
4	24	남	父사망/母생존 이복형제 (비동반입소)	대학교 재학	부모이혼	보육원 17년	친모 연락
5	22	여	父母 : 생존 이복형제 (비동반입소)	대학교 재학	부모이혼 부친학대	쉼터3년 그룹홈4년	연락
6	24	남	父母 : 생존 형제 : 3 (동반입소)	대학교 재학	부모이혼	보육원 17년	부모단절 형제연락
7	21	여	父생존/母모름 형제 : 2 (동반입소)	대학교 재학	부모이혼	그룹홈 12년	부 연락 모 단절

3) 보호종료 된 이후에도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는 이 연구의 목적인 원가정과 관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제외하였고, 보호종료 후 통상 5년간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였다.

3) 심층면담과 전사

연구의 책임자는 10년 이상 인권변호사와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인권 현장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연구자의 선행경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보호대상아동 혹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편견이나 감정적 동조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실제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 그 진술 속에 녹아있는 개인별 경험에 대하여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담 자료의 포화를 위해 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녹취하며 진행하였고, 이후 전사 및 의미단위 추출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면접을 요청하여 1시간가량 추가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반복해서 들으며 직접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는 질적분석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와 함께 세그멘팅 기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 냈다.

2. 연구 윤리의 엄격성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상호적 대화를 전제하므로 엄격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할 때에 자립 지원 기관의 관계자와 잠재적 참여자에게 연구참여자 모집문건과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였다. 연구 모집문건과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기간과 참여방법,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참여자의 준수 사항, 연구 참여로 기대되는 이익과 연구 참여로 받게 될 금전적 보상, 연구 참여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치료 방법, 연구도중 참여 거부와 철회의 자유, 연구참여 동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되며, 녹취록에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구 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점을 알렸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의 실명 대신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관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출생연도, 성별, 직업, 거주지역, 가정외보호 체계유형, 거주기간,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연구자의 컴퓨터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하여, 본 연구와 관계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그리고 연구과정 및 절차의 윤리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획득한 후에 연구를 시행하였다(1040198-210809-HR-126-02).

Ⅲ.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경험분석

1)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

표 2

연구 참여자 생애경험

	1. 여	2. 여	3. 여	4. 남	5. 여	6. 남	7. 여
0세	2001생 원가정 부모님 형제와 생활	1998생 4살까지 원가정 생활	2001생 친모 1살때 가출 초6까지 원가정 생활 조모 조부 친부 이복동생과 동거	1998생 부모와 원가정 생활	2002생 초6까지 원가정 생활 1살 엄마가출 조모, 친부, 삼촌과 생활 12살 조모사망 13세 삼촌과 아빠의 학대로 분리	1998생 부모형제와 원가정 생활	2001생 8살까지 원가정 생활
1							
2							
3							
4							
5							
6							
7	8살때 부모이혼/ 외삼촌집 (친모와) 2011까지	4살 때 부친구속+ 부부이혼으로 보육원 입소	조모 조부 친부 이복동생과 동거	보육원2 입소 얼마 후 친부사망 초6 시설이전 중2 친모재회 13세 친부폭력 보육원 홀로입소 15세 친부사망	조모, 친부, 삼촌과 생활	4살 때 부모이혼 4남매 모두 보육원 입소 초2 부모재회 학대피해아 동생터 중3 그룹홈 입소 중3 친모재회	초1 부모이혼 3자매 모두 그룹홈 입소 초3 친부재회
8							
9							
10	1년간 그룹홈 (학대 받음)	현재 친부는 교도소 수감중	13세 친부폭력 보육원 홀로입소 15세 친부사망	초6 시설이전 중2 친모재회 13세 친부폭력 보육원 홀로입소 15세 친부사망	조모, 친부, 삼촌과 생활	4살 때 부모이혼 4남매 모두 보육원 입소 초2 부모재회 학대피해아 동생터 중3 그룹홈 입소 중3 친모재회	초1 부모이혼 3자매 모두 그룹홈 입소 초3 친부재회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동학대수사 보육원 홀로입소		13세 친부폭력 보육원 홀로입소 15세 친부사망	초6 시설이전 중2 친모재회 13세 친부폭력 보육원 홀로입소 15세 친부사망	조모, 친부, 삼촌과 생활	4살 때 부모이혼 4남매 모두 보육원 입소 초2 부모재회 학대피해아 동생터 중3 그룹홈 입소 중3 친모재회	초1 부모이혼 3자매 모두 그룹홈 입소 초3 친부재회
20							
20	2020퇴소	2017퇴소	2021퇴소	2017퇴소	2021퇴소	2017퇴소	2020퇴소

연구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으로 원가정 내 생활부터 가정외보호를 거쳐 보호종료로 인해 자립하기까지 각자의 개별적 생애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남성 2명, 여성 5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연령대는 21세 3명, 22세 1명, 24세 3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부모가 현재 모두 생존해 있는 사람은 3명이었고,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생사여부를 모르는 사람은 3명이었다.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연락두절로 생사를 모르는 경우는 1명이었다.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한 기간은 참여자별로 다소 편차가 있는 편이었지만, 유아기 시절인 생애초기에 분리된 경우와, 원가정에서 초등학교 재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무렵인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원가정과 분리되어 시설보호를 생활한 경우가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지금까지의 생애사를 요약·정리한 생애사표는 표 2와 같다.

2) 연구참여자의 원가정과 관계 경험 분석

연구자는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 관계 연결 및 단절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범주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7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Colaizzi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4개의 범주, 9개의 범주, 18개의 의미단위로 각각 추출되었다.

표 3

연구 참여자 생애경험

의미단위 (18)	하위범주 (9)	범주 (4)
폭력과 학대로 인한 상처(1,5)	원가정으로부터 탈출	원가정과 분리로 관계가 끊어지다
살기 위한 몸부림(1,3)		
해체된 원가정(1,7)		
흐릿한 기억에 봉인된 이별(2,4,6)	원가정과 헤어짐	
다시 피어오르는 애잔한 그리움(1,2,3)		
재회가 가져다 준 생경함 (4,5,6,7)	시설에서의 재회	
짧은 만남과 긴 단절(3,6,7)		시설에서 연결과 단절을 다시 경험하다
눈치를 봐야하는 만남(3,4,6)	시설에서도 계속되는 단절	
이미 답이 정해진 선택지 (1,2,3,4,5)	시설거주와 가정복귀 사이 고민	
민폐가 될 것 같은 나(1,3,4,5,7)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사이로 발전 (3,4,5)	퇴소 후 연결되는 관계의 울타리	홀로서기를 맞아 선택의 기로에 서다
이해를 넘어 연민과 공감을 느낌(5,7)		
잠시 접어둔 원가정에 대한 생각(2,4)	퇴소 후 더욱 확고해지는 단절	
원가정과 절연을 결심(6)		
형식적인 지원(1,2)	관계 연결을 위한 지원이 부재함	자립준비청년의 꿈에는 날개가 필요하다
제 시기를 놓친 지원 (2,4)		
부족한 정서적 지원과 관계상담(1,3,4)	관계 단절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	
과거를 끊고 당당하게 자립(6,7)		

각 하위범주 간의 공통된 본질을 탐색한 결과, 〈원가정과의 분리로 관계가 끊어지다〉, 〈시설에서 연결과 단절을 다시 경험하다〉, 〈홀로서기를 맞아 선택의 기로에 서다〉, 〈자립준비청년의 꿈에는 날개가 필요하다〉 등으로 범주가 도출되었다.

2. 범주 1 : 원가정과의 분리로 관계가 끊어지다

1) 원가정으로부터 탈출

(1) 폭력과 학대로 인한 상처(1,5)

참여자 7명 중 3명은 원가족의 직접적인 학대로 인하여 원가정에서 분리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쉼을 제공하는 안식처와 같은 장소이다. 하지만 원가족에게 학대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원가정은 안식처라기보다는 두렵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 학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는 어린 아이인 자신을 제대로 돌보아주기는 커녕 물건처럼 던지고, 욕하고, 수시로 때려서 아프게 하는 원가족에게 적개심과 분노감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의 언어는 다양하게 분화하였는데, 전쟁터 같은 집, 듣기 싫은 말이 난무하는 집, 진짜 힘들었던 원가정이라는 당시 원가정에 대한 느낌 뿐 아니라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는 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2) 살기 위한 몸부림(1, 3)

학대를 당하던 어린 시절의 참여자들은 가정의 해체를 비롯한 극단적인 상황에 교차적으로 놓여있었다. 당시의 원가정은 학대 행위자의 폭력이 참여자 뿐 아니라 다른 원가족들에게도 계속되면서 가정의 안정적인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모두 절망과 혼란을 경험했는데, 이는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한 절망은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만들어 어린 나이임에도 계속 자해와 자살시도를 반복하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참여자3,5)도 있었고, 그마저도 너무나 힘겨워서 당시 참여자를 지켜보던 주변(학교 선생님 등)에서 신고를 해 주어 벗어나는 상황도 찾아볼 수 있었다(참여자1). 학대 상황에서 외부에 신고를 하여 원가정에서 빠져나오게 된 참여자 중 단 한번의 신고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 번 경찰이 출동하였고, 동네 사람들도 참여자가 원가족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여러 번의 신고 끝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고 쉼터로 가고 싶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러야만 겨우 분리된 참여자가 더 많았다.

2) 원가정과의 헤어짐

(1) 해체된 원가정(1,7)

학대는 없었지만 부모의 이혼과 가정의 빈곤으로 도저히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본인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아동의 정서적인 애착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친척들에게 맡겨진 경우도 있었다. 원가족이 없는 다른 대체 가정에 맡겨져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시설로 입소하게 된 경우였다(참여자7). 대리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유를 자세히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불가피하게 아동을 분리해야 할 경우에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하고 자연스러운 보호의 장으로 대리가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Goldstein, Freud, Solnit(1973)의 최소침해대안(least detrimental alternative)의 원칙이 현실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흐릿한 기억에 봉인된 이별(2,4,6)

학대는 없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경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입소한 경우도 있었다(참여자2,4,6). 원가정에서 생활을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이 생각나는 삶의 방식이나 상호작용 과정이 없었기에 이런 참여자들은 오히려 입소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원가족과 함께 생활을 했던 하지 않았든 간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원가족을 마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원가족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잊으며 살아간다고 답변하였다.

3. 범주 2 : 시설에서 연결과 단절을 다시 경험하다

1) 시설에서의 재회

(1) 다시 피어오르는 애잔한 그리움(1, 2, 3)

연구참여자들은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 공통적으로 원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입소 연령, 원가족과의 애착 정도, 기관의 분위기, 입소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인 사건 등에 따라 시설 적응에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 중 학대경험 유무를 불문하고 원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학대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참여자1, 3) 뿐 아니라 자신의 근원에 대한 궁금함과 막연한 그리움, 소외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참여자2). 참여자 중 한 명은 학대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여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나 생일 등 통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들에 시설에 자신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쓸쓸하고 힘겨웠다고 말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원가정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생활환경이 학대로 인하여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가정에 방문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비로소 연락이 끊어진 원가족(친모 등)이 더욱 그리워진 참여자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다시 이 원가족을 만나야 하는지 몰랐고, 주변에 그런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조차 시도하기 어려워서 그저 그 그리움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있었다.

(2) 재회가 가져다 준 생경함 (4, 5, 6, 7)

시설에 입소한 연구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입소 시기의 충격과 불안을 이겨내고 낯선 곳에서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원가정과 심리적으로도 분리하는 과정을 겪었다. 시설에서는 참여자들의 최소한의 필요와 욕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원가정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원가족들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거나 서운하여 서서히 마음 문을 닫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참여자들 대부분은 시설에서 원가족과의 재회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연령(3세, 4세, 8세, 13세, 14세)은 대부분 달랐고 입소경위도 각자 달랐음에도 시설에 살면서 오히려 원가족과 재회⁴⁾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참여자4, 5, 6, 7). 참여자가

4) 이 연구의 주제인 '연결'이라는 표현 대신 '재회'라고 명명한 이유는 참여자들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이 시설 입소 후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대면한 정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대면이 원가정과 관계 연결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 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수소문 끝에 시설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기도 하였고, 아무 전후 설명이나 맥락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자신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시설에 나타나는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재회 경험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이 많이 드러냈던 감정은 ‘생경함’ 혹은 ‘어색함’이었다.

2) 시설에서도 계속되는 단절

(1) 짧은 만남과 긴 단절(3,4,6,7)

시설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참여자 중에는 원가족 중 누군가와 영원한 단절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 참여자가 어릴 때 친모가 이미 가출 혹은 이혼하여 평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영구적인 단절 상태인 사람(참여자2, 3, 7)이 있는가 하면, 친부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참여자 3, 4)도 있었다. 충격적이고 힘든 경험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은 차분한 진술 태도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어릴 때 엄마가 갇난아기였던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이유를 같은 여자로서 이해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자신을 그렇게도 학대하던 친아버지가 결국 평생 벗어나지 못한 알콜 중독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참여자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원가족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구속수감(참여자2, 6) 등의 이유로 결국 단절에 이르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이 경험을 말한 참여자는 이후 원가족이 형기 만료로 출소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다시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참여자에게 원가족의 구속이라는 사건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2) 눈치를 봐야 하는 만남(3,4,6)

참여자 중에는 시설에 입소한 후 다시 원가정과 연락이 닿게 되어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시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왕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이 있었다(참여자3, 4, 6). 참여자 중 한 명은 원가정에 다녀올 때 용돈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결국 아예 원가정에 방문하는 횟수를 스스로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원가족이 시설에 오는 행위 자체를 비밀로 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참여자는 원가정에 다녀오기 위해서 서약서를 반드시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완전히 있는 그대로 존중받거나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3) 시설거주와 가정복귀 사이 고민

(1) 이미 답이 정해진 선택지 (1, 2, 3, 4, 5)

일정 기간 부모와 분리되었다가 재회할 때 원가정과 애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가정외보호 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유영림 외, 2015).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사실상 없었음을 토로하였다. 참여자 중 시설에서 살 때 지속적으로 원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연결 욕구를 보인 사람(참여자1)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파악이나 지원이 없었다(참여자3, 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양했는데, 원가족과 헤어져서 시설에 사는 것 자체가 주는 허전함과 소외감, 속상함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시설에서 퇴소하여 원가족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시설에서 단 한번도 원가정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갈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있었다. 또다른 참여자는 원가정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설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단절에 이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참여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참여자2, 5). 이렇게 참여자가 생활하던 시설에서 원가정과 재결합이나 주기적인 만남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현재 삶의 터전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신의 욕구 표출에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민폐가 될 것 같은 나(1, 3, 4, 5, 7)

참여자 중 대부분은 시설에서 살면서 원가정에 복귀하라는 원가족의 제안을 받거나, 위험요소가 제거되어(학대 행위자의 사망 등)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결국 복귀하지 못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참여자 1, 3, 4, 5, 7).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가정에 복귀하면 짐이나 민폐가 될 것 같아서’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원가정의 경제상황이나 위생상황, 관리되지 않는 생활패턴 등이 좋지 않다는 것과 군대면제 등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고려한 것이었다. 부모와의 격리 이후에도 간헐적인 만남이나 접촉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친부모와 주기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친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워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Egeland & Sroufe, 1981; Haight et al., 2003)와도 연결되는 경험 진술이었다.

4. 범주 3 : 홀로서기를 맞아 선택의 기로에 서다

1) 퇴소 후 연결되는 관계의 울타리

(1)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사이로 발전(3,4,5)

여러 참여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가정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보호 종료로 인한 퇴소를 전후로 하여 성인으로서의 일상적 자율성이 획득되는 경험을 토대로 원가정과의 관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참여자 3, 4, 5). 시설 퇴소 후 원가정에 물리적으로 복귀하여 생활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앞선 연구에서도 보호종료 직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자립준비청년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에게 부모나 원가족은 자립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시설에 있을 때는 부모에 대해 그리움과 두려움이라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생활을 같이 하면서 부모나 가족은 하루빨리 다시 벗어나고 싶은 굴레, 족쇄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정선옥 외, 2019). 성인기에 이르러 원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취업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자연히 원가정을 떠나 독립생활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립준비청년의 ‘관계의 연결’이 원가정과의 동거로 바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고 건강한 거리에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황을 수용하는 것도 ‘연결’의 중요한 양상에 해당한다.

(2) 이해를 넘어 연민과 공감을 느낌(5, 7)

한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관계 경험은 원가족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더 확장할 수 있다(이정애 외, 2019). 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존에 사회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 보다 새로운 의미의 가족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보호종료를 맞아 자립을 하면서 오히려 원가정과의 관계가 전보다 나은 관계로 흘러가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중 학대로 인하여 원가정에 살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학대라는 큰 사건을 겪고도 보호종료로 인한 퇴소 후 오히려 원가정에 대한 연민과 약간의 공감을 표현하며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참여자5). 그 과정에서 예전에 자신을 학대했던 원가족에게까지 연민을 느끼며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는 등 좀더 적극적인 연결의 노력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학대한 원가정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표현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학대의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다. 또한 사정상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시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지금은 오히려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원가족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스스로 왕래를 하고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7).

2) 퇴소 후 더욱 확고해지는 단절

(1) 잠시 접어둔 원가정에 대한 생각(2, 4)

가정외보호 아동이 성인이 되는 동안 부모나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관계가 개선되지도 않았을 때는 오히려 원가정이 보호종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을 방해하고 자립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김수정 외, 2017). 연구참여자 중에도 퇴소를 한 이후 홀로 생활하면서 연락이 되는 원가정과 간간히 연락하는 것 이외에 더 관계의 진전을 꾀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부분의 욕구를 억누르며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가 있었다(참여자4). 또한 적극적으로 원가정과의 연결이나 단절 욕구를 마음에 품고 있기보다는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감정과 상황으로 혼란스러워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2). 이들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가정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삶이 학업이나 취업 등 당면한 인생의 과제들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 복잡한 주제의 생각 자체를 외면하려고 하였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원가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거나 고민하려고 하기보다는 되도록 그때 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원가정과 절연을 결심(6)

참여자 중에는 원가정의 역기능을 인식하고 자립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원가정과의 연락을 단절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참여자6). 이 참여자는 학대 경험 없이 부모의 이혼이 계기가 되어 형제들과 함께 입소하였고,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도 친부 및 친모와 각각 연락을 이어오면서 생활하였지만, 오히려 시설 퇴소 후에 원가정과의 단절을 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에 있을 때에는 시설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삶의 모든 필요가 대체로 해결된 상태에서 간혹 만나는 친부모와의 만남은 용돈을 받거나 급식이 아닌 외식을 먹는 정도의 이벤트성 행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원가정의 역기능이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거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 만기로 보호종료되어 취업 현장에 바로 나가게 된 참여자는 친부모의 생활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참여자의 부모 역시 보육원에서 아동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청소년기에 임신하여 보육원에서 강제 퇴소를 당하고 극빈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룬 후 결국 가정이 해체되면서 아이들은 보육원에 입소하였다. 참여자 부모는 범죄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거나 타인을 가해하여 교도소에 들어가는 등 침체하는 모습을 지속하였다. 그래서 참여자는 본인 친부모의 삶에 환멸을 느껴 원가정과 절연을 결심하였다.

5. 범주 4 : 자립준비청년의 꿈에는 날개가 필요하다

1) 관계 연결을 위한 지원이 부재함

(1) 형식적인 지원(1, 2)

참여자들은 모두 보호종료로 인한 퇴소를 앞두고 시설을 통해 원가정과의 연결이나 단절에 대한 욕구조사나 필요한 지원 등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참여자1, 2).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은 비단 원가정과의 관계와 관련한 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망라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부족을 함께 고려한 답변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설에 생활할 때나 시설에서 퇴소한 직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가정과의 관계 연결 및 단절에 관한 공적인 개입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2) 제 시기를 놓친 지원(2, 4)

참여자 중에는 보호종료로 인한 퇴소를 앞두고 시설을 통해 원가정과의 연결이나 단절에 대한 욕구조사나 지원이 있어야 할 때를 놓쳐서 이미 틀어진 관계가 고착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여자 2, 4).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원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복잡한 감정은 버려졌다는 절망과 분노, 미움 등의 감정으로 변화하였는데, 그렇게 마음이 굳아가는 동안 아무도 그 상태를 들여다보거나 물어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참여자들에게 큰 공허함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3) 부족한 정서적 지원과 관계상담(1, 3, 4)

참여자들 중에는 지금 원가정과 연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시설에 있을 때부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다. 퇴소 당시의 막막함과 원가정과 연결하지 못하고 퇴소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서운함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참여자1, 3, 4). 원가정과의 관계가 매우 부족하다보니 원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라도 자신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을 줄 만한 어른이 필요했다는 진술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관계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퇴소를 앞둔 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생활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친구, 가족/친척에 의한 지지보다도 보육사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지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황정하 외, 2017).

2) 관계 단절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6,7)

참여자 중에는 원가정과의 연락이 오히려 온전한 자립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퇴소 후 자립에 매진하기 위해 원가정과의 관계를 단절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사람도 있었다(참여자6, 7). 원가정이 지닌 역기능을 인식하여 자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원가정과의 관계 단절을 선택한 경우, 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예, 자신에 대한 정보가 원가정에게 노출되지 않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의 허락을 받거나 원가정에 통보가 필수적인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역기능적인 가족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보호아동에게 부모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사건들 속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부모 접촉이 오히려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athers, 2000). 참여자 중에는 원가정과의 단절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단절이 사실 상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 사회에서 보호대상아동 지원 방향을 시설 입소 위주의 정책이 아닌,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원천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참여자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7명이 최초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한 시기부터 시설(보육원 또는 그룹홈)에서 거주하다가 보호종료로 인한 시설에서의 퇴소시기까지 원가정과의 관계 연결 및 단절 경험을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론 및 논의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준비청년들은 원가정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거나, 그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전적으로 타인의 판단과 개입에 의하여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소 당시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시설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설에 형제가 함께 보호를 받는 경우, 원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낮거나 피학대 경험 수준이 비교적 낮을수록 시설 적응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정원철 외, 2014)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유와 보호종료까지 나타난 보호과정에서 원가정과의 관계 연결과 단절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원가정과의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원가정 관계지원 서비스의 중요도나 관련 서비스와의 우선순위에서 모두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아동에게 있어 원가족의 존재 자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보호아동과 원가족간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정선옥, 2002; Kim, 2015)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참여자들은 보호시설 생활 속에서 원가정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원가정과 재회하는 것은 시설 퇴소와 원가정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만큼, 참여자 당사자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 중 기억이 없는 어릴 때 시설에 입소한 참여자라도 시설입소로 인해 곧바로 원가정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는 없었고 오히려 입소 이후 원가정과 재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원가족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원과 원조 그리고 관계적 요소가 긍정적일수록 시설부적응이 감소된다는 연구가 있다(정원철 외, 2014). 따라서, 원가족과의 시설에서의 재회 경험은 보호아동의 보호시설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시설의 퇴소 및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만큼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넷째,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나 보호종료를 맞아 자립하는 시기 전·후,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원가정과의 관계 연결 및 단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설보호아동과 원가정의 접촉빈도가 곧바로 해당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이화명, 2011), 참여자들 중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원가정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혹은 단절할지에 대하여 공식적·제도적 틀 안에서 상담이나 정보제공을 받아보거나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었다. 즉,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원가정 관계지원서비스를 개인별 자립생활계획 수립 시 개입전략 수립이나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처음 원가정으로부터 분리시 타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아동의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시부터 원가정에 대한 관계 연결 및 단절을 포함한 지원 계획에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수정 외, 2017). 가정의 보호아동이라도 친생부모와 같은 연고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아동이 분리될 때부터 원가정 복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복귀 계획에 이들의 자발적 의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원가정 역시 해당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감과 실질적인 준비여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시설 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상처와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개입하여 치유하고 그 예후를 세심히 모니터링하여 개별아동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아동에 대한 개입 및 모니터링 업무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된다면 과거 이들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이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호시설에서 원가정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그 우선순위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가정외보호 서비스 내에서 원가정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책적으로 부여할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내에서 원가정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가정에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차원의 관계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지원의 방식은 아동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원가족이 해당 아동의 자립생활 계획 및 준비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원가족 회복 및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과정에 원가정과 아동에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당장은 분리되어 생활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원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호아동의 원가족 재회경험은 원가정복귀를 고려하게 할 만큼 아동에게는 인생사적으로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보호시설에서의 원가정 복귀 실무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원가족을 재회한 이후에 원가정으로 자신이 돌아가면 되면, 원가정에 되레 짐이 될까봐 또는 원가정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국 시설에서 보호종료를 맞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지원하려고 해도,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시설의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고 이것을 결정하는 외부 위원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가 원가정 복귀를 고려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호시설 내외의 다양한 준비 및 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원가정과의 관계 연결 및 단절에 관한 지원 경험 자체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보호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과의 관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을 통하여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의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정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22년 17개 시·도 모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정부는 2023년 기준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에게 3개월 내 10회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그러나, 이러한 지원 내용 중에 자립준비청년

의 원가정 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가정과 분리되어 살아온 자립준비청년이 가질 수 있는 원가정에 대한 주저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여 가족치료를 통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원가정의 역기능을 적정 수준으로 해소하는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참여자를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선정함에 따라 참여자의 성비나 생활했던 시설의 종류 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가 원가정에서 지낸 기간(예, 5년 이내, 5년 이상 10년 이내 등)이나 생활했던 시설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면, 이들의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종료로 인한 시설 퇴소를 하고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회고적인 방법을 통해 원가정과의 단절 및 연결 경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이기에, 한해씩 더해가며 달라지는 원가정에 대한 관계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가정 분리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성인기를 맞이하기까지 한 해씩 달라지는 원가정에 대한 경험과 그에 필요하거나 주효했던 지원체계를 다면적으로 연구하거나 지원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동일 집단에 대한 추적조사 내지는 종단연구(longitudinal analysis)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석 (2022.08.24.). ‘보호종료 청년’ 또 극단선택...“사회적 보살핌 절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8241716001>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7.
- 김명성 (2012). **시설청소년의 자립과정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보건복지부 (2021). **아동보호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3).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 보건복지부 (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보건복지부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2)**.
-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p.192.
- 이광우. (2021)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에서의 법원의 역할.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 복귀제도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79-89.
- 이정애. (2018).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혼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6-107
- 이화명 (2011). 아동양육시설 시설생활자의 원가족 접촉에 따른 문제행동 특성의 연구. **교류 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8(1), 85-112.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14, 145-168.
- 정원철, 이화명 (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조순실 (2011). **그룹홈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삶의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통계청 (2022). **인구동향조사**.

황정하, 박수지 (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119-143.

Biehal, N., Clayden, J., Stein, M., & Wade, J. (1995) *Moving on: Young people and leaving care schemes*. London: HMSO.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onald S. Valle & Mark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p.6.

Egeland, B., & Sroufe, L. A. (1981). Attachment and Early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2, 44-52.

Goldstein, J., Freud, A., & Solnit, A. (1973).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al experiences with family of origin among youth aging-out from out-of-home care

Kim, Yewon* · Hwang, Jeongha**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experiences of Youth Aging-out from Out-of-Home care (YAOH) with their families of origin. It aimed to explore policy improvements for fostering or discontinuing connections between YAOH and their families of origi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individuals who had aged-out of protective custody within the past five year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involving the transcription and textual analysis of participants' recorded interviews.

As a result, 4 categories, 9 subcategories, and 18 meaning units were derived.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was categorized as "Severing Relationships through Separ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experience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family of origin during out-of-home care was categorized as "Experiencing Connections and Disconnections again in the out-of-home cares", and the experienc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origin as YAOH preparing to stand alone was categorized as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choosing to stand alone", and the experience of support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origin before and after YAOH was categorized as "Wings are Needed for the Dreams of YAOH".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a comprehensive plan for suppor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origin should be formulated from the point of a child's separation. While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upporting

* Attorney at law, Disability Rights Law Cente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hwang@jnu.ac.kr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origin during the period of out-of-home care, practical support for the reunification with the family of origin should also be more systematically and concretely implemented. In addition, some discharge support structures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origin should be adequately provided for the YAOH, grounded within appropriate legal and program provisio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proposing policy improvements to support YAOH as unique individuals capable of independence by closely examining the disconnection and connection with the origin family for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homes, subject to protection, as they transition to independence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protective custody.

Key Words: Youth Aging-out from Out-of-Home care (YAOH), out-of-home care, family of origin, relationship support, qualitative research